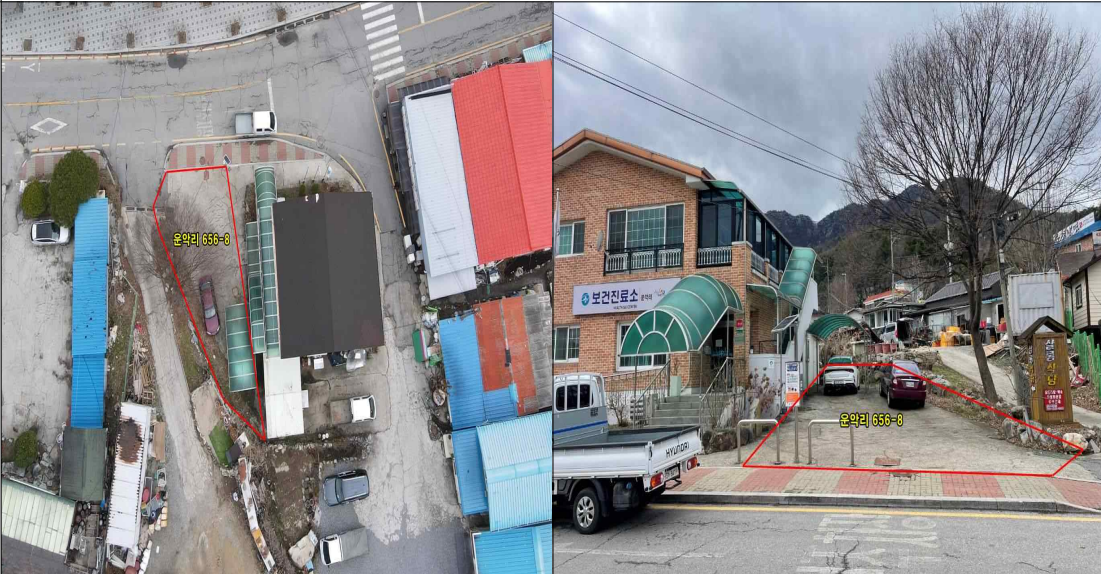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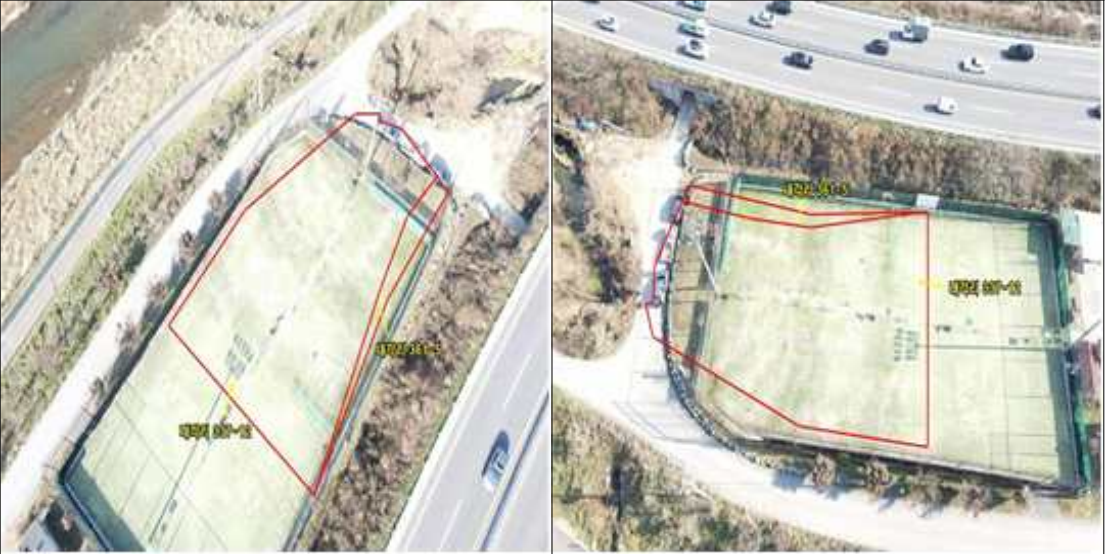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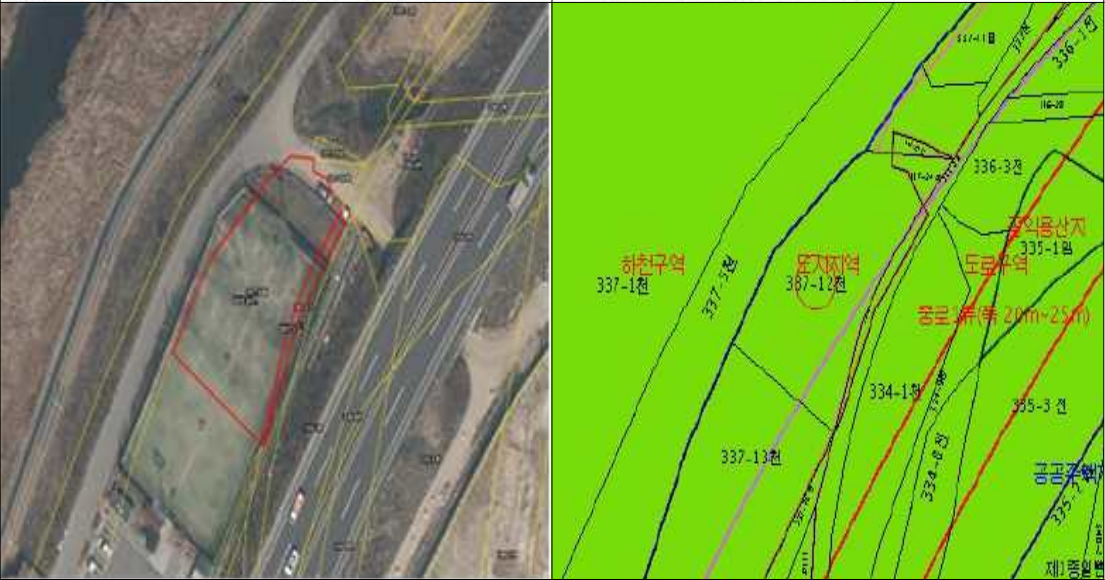


1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 264-2 등 2필지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제령리 264-2	707	제방	보전관리지역	-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제령리 264-3	795	하천	보전관리지역	-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		-	-	-
관리현황	○ 하천부지				
추천사유	○ 폐기물 투기·잡초 및 잡목 제거 등 민원과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조경수 식재가 필요한 재산				
현황사진					

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656-8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운악리 656-8	135	대	계획관리지역	21,573,0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	-	-	-	-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		-	-	-
관리현황	○ 가평군 보건소에서 유상대부하여 대지로 이용중				
추천사유	○ 펜션, 골프장, 하천 인접하고 있어 활용가능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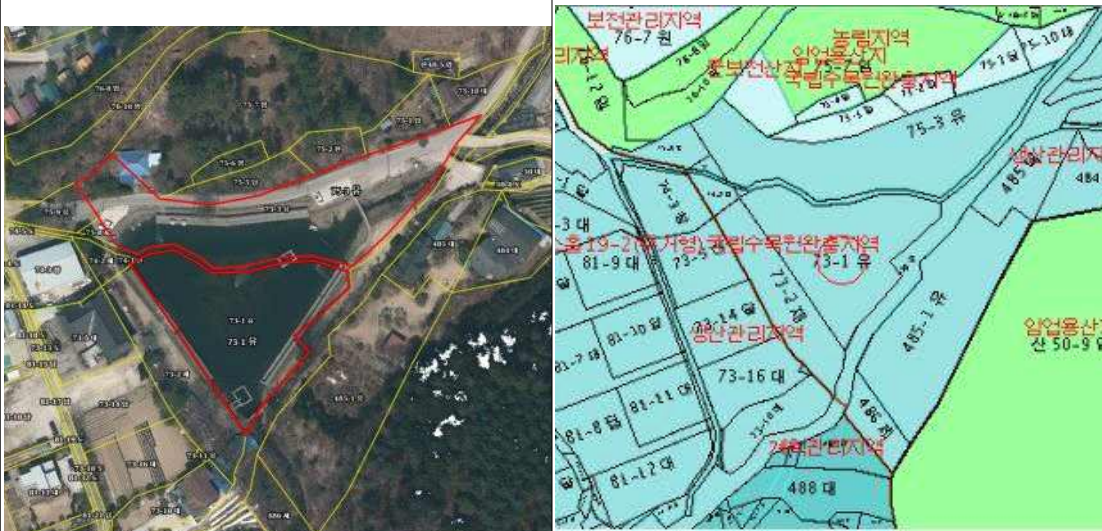
3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54-2 등 2필지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경안동 254-2	59	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99,002,0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경안동 254-4	138	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231,564,000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		-	-	-
관리현황	○ 나대지				
추천사유	○ 주거지역 내 위치한 미활용 대지로 개발 필요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4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71-1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교문동 371-1	268	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66,000
	지번	면적(m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	-	-	-	-
건물현황	연면적(m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		-	-	-
관리현황	○ 나대지				
추천사유	○주변에 구리아트홀, 학교, 주택 등이 인접해 있어 활용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37-12 등 2필지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내각리 337-12	1,091	하천	자연녹지지역	275,6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내각리 361-5	83	도로	자연녹지지역	275,600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		-	-	-
관리현황	○ 남양주시에서 체육용지로 유상대부하여 이용중(알동산 족구장)				
추천사유	○ 인근에 유원지, 공공주택지구 예정지가 인접하고 있어 활용도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산7-47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석운동 산7-47	600	임야	도시지역	37,100
	지번	면적(m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	-	-	-	-
건물현황	연면적(m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		-	-	-
관리현황	○ 완만한 경사의 소규모 임야임				
추천사유	○ 도시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 토지와 공동으로 개발 시 토지 가치 상승이 기대됨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7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 36-3				
재산구분	舊 덕풍지구대 건물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덕풍동 산36-3	255	임야	도시지역	2,516,0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	-	-	-	-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176.76		2	1986	-
관리현황	○ 공실상태의 舊 덕풍지구대				
추천사유	○ 수도권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인근에 위치하고 도로와 접하여 접근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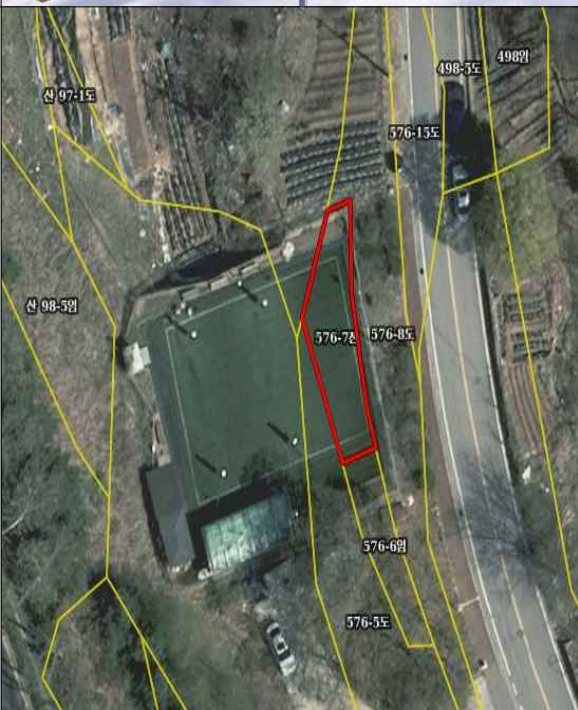
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73-1, 75-3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직동리 73-1	2,509	유지	생산관리지역	121,3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직동리 75-3	3,312	유지	생산관리지역	121,300
관리현황	○ 직동저수지				
추천사유	○ 읍내 공원부지 활용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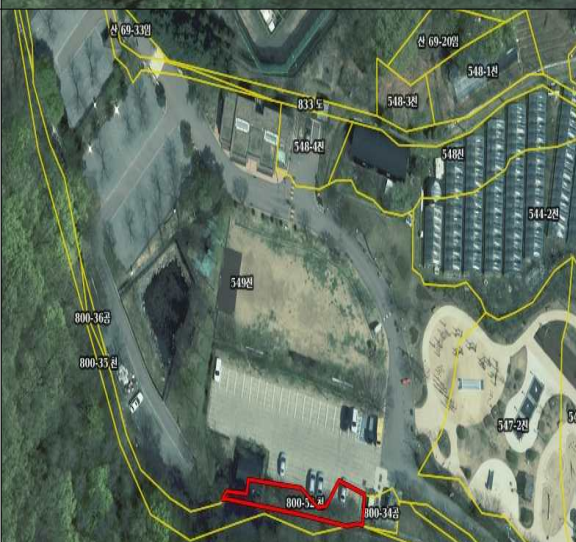
9	경기도 연천군 증면 삼곶리 42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삼곶리 42	648	잡종지	생산관리지역	27,900
관리현황	○ 유휴 잡종지				
추천사유	○ 유휴 잡종지로 활용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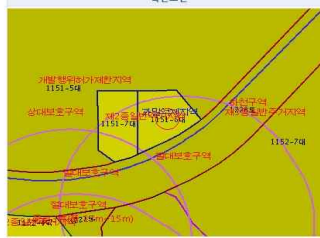
10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79-2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신산리 79-2	18	도로	자연녹지	42,200
관리현황	○ 용도폐지 예정재산으로 현황 소규모 공지				
추천사유	○ 인접지 소유자 양주군으로 대부 또는 매수 검토대상 재산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11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10-5				
재산구분	토지 및 건물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신곡동 610-5	1,058		제2종일반주거지역	1,839,000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564.17		B1/2F	1999	
관리현황	○ 공실상태의 舊경기도북부경찰서 경의로 별관 부지				
추천사유	○ 청룡초등학교와 200m 거리의 주거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12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29-3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하자포리 229-3	757	임야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2,4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잡종지 상태의 유휴지				
추천사유	○ 개발 진행지역 인근에 소재하여 활용가능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13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76-7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과천동 576-7	93	전	자연녹지지역	608,400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과천시 대부재산																								
추천사유	○ 기존 대부계약 중으로 지자체 활용가능성 확대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 프로그램 1 - Microsoft Edge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PrintPop.jsp?selGbn=umd&isNoScr=script&is_ty... <table><tr><td>소재지</td><td>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76-7번지</td><td>면적</td><td>93 m²</td></tr><tr><td>지목</td><td>전</td><td>면적</td><td>93 m²</td></tr><tr><td>개발공시지가 (㎡당)</td><td>608,400원 (2024/01)</td><td></td><td></td></tr><tr><td>지역지구등 지정여부</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td><td>도시지역(2015-05-19) , 자연녹지지역(2024-08-14) , 소로2류(폭 8m~10m) (2014-02-03)(준법)</td><td>개발제한구역(2024-08-1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td></tr><tr><td></td><td></td><td>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10)</td><td></td></tr></table> 확인도면  범례 ☐ 공익용산지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개발제한구역 ☐ 왕도2류(폭 50m~70m) ☐ 소로2류(폭 8m~10m) 축척 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별도보조지구, 「국토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학교근접제한 일몰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지방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축척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지방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76-7번지	면적	93 m ²	지목	전	면적	93 m ²	개발공시지가 (㎡당)	608,4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도시지역(2015-05-19) , 자연녹지지역(2024-08-14) , 소로2류(폭 8m~10m) (2014-02-03)(준법)	개발제한구역(2024-08-1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10)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76-7번지	면적	93 m ²																						
지목	전	면적	93 m ²																						
개발공시지가 (㎡당)	608,4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도시지역(2015-05-19) , 자연녹지지역(2024-08-14) , 소로2류(폭 8m~10m) (2014-02-03)(준법)	개발제한구역(2024-08-1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10)																							

14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00-52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하안동 800-52	200	하천	자연녹지지역	-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광명시에서 캠핑장 용도로 대부 중																				
추천사유	○ 기존 대부계약 중으로 지자체 활용가능성 확대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 프로그램 1 - Microsoft Edge https://www.eum.go.kr/web/ar/lu/LandDetPrintPop.jsp?selGbn=umd&isNoScr=script&is_ty... <table><tr><td>소재지</td><td>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00-52번지</td></tr><tr><td>지목</td><td>하천</td></tr><tr><td>면적</td><td>200 m²</td></tr><tr><td>개발공시지가 (㎡당)</td><td>공시지가 정보가 없습니다. (Code : 4017)</td></tr><tr><td>지역지구</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td></tr><tr><td>지정여부</td><td>자연녹지지역</td></tr><tr><td>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td><td>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광역계획법></td></tr><tr><td>「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td><td>토지거래제한에 관한 허가구역(2019-08-14)(~2026.11.4)</td></tr></table> 확정도면 범례  축척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하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은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의 지정 시 지정도면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도면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축척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00-52번지	지목	하천	면적	200 m ²	개발공시지가 (㎡당)	공시지가 정보가 없습니다. (Code : 4017)	지역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여부	자연녹지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광역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토지거래제한에 관한 허가구역(2019-08-14)(~2026.11.4)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00-52번지																				
지목	하천																				
면적	200 m ²																				
개발공시지가 (㎡당)	공시지가 정보가 없습니다. (Code : 4017)																				
지역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여부	자연녹지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광역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토지거래제한에 관한 허가구역(2019-08-14)(~2026.11.4)																				

15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6																				
재산구분	舊 지구대(치안센터) 건물																				
토지현황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산본동 1151-6	504.5	대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57,000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		층수	준공시점	비고																
	154.67		2	1993년	舊 수리파출소																
관리현황	○ 공실상태의 舊 수리파출소 부지																				
추천사유	○ 인근 관공서, 학교, 아파트 단지, 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활용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 프로그램 1 - Microsoft Edge https://www.eum.go.kr/web/ar/hu/LandDetPrintPop.jsp?selGbn=umd&sisNoSc=script&sis_ty... <table><tr><td>소재지</td><td>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6번지</td><td>면적</td><td>504.5 m²</td></tr><tr><td>지목</td><td>대</td><td>지대</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종로1(종로 20m~25m)(합합)</td></tr><tr><td>개발공시지가 (㎡당)</td><td>2,657,000원 (2024/01)</td><td></td><td></td></tr><tr><td>지역지구등 지정여부</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td><td>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종로1(종로 20m~25m)(합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현부제항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불도보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현행)(2022-09-06)(비행안전제3구역(현행) 제178.21m이하 취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광역배치법>.</td><td>「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td></tr></table> 확인도면  범례 ☐ 과밀억제지역 ☐ 도시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과밀억제권역 ☐ 해안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불도보구역 ☐ 산대보호구역 ☐ 종로1(종로 20m~25m) ☐ 종로3(종로 12m~15m) ☐ 공공청사 ☐ 학교 ☐ 법정동 축척 1 / 120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불도보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설정 또는 지정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6번지	면적	504.5 m ²	지목	대	지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종로1(종로 20m~25m)(합합)	개발공시지가 (㎡당)	2,657,0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종로1(종로 20m~25m)(합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현부제항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불도보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현행)(2022-09-06)(비행안전제3구역(현행) 제178.21m이하 취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광역배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6번지	면적	504.5 m ²																		
지목	대	지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종로1(종로 20m~25m)(합합)																		
개발공시지가 (㎡당)	2,657,0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종로1(종로 20m~25m)(합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현부제항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불도보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현행)(2022-09-06)(비행안전제3구역(현행) 제178.21m이하 취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광역배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0-3

재산구분

舊 지구대(치안센터) 건물

토지현황

지번	면적(m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영화동 410-3	137.1	대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1,717,000
지번	면적(m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137.1	2	1993년	舊 영화파출소

관리현황

○ 공실상태의 舊 수리파출소 부지

추천사유

○ 소규모 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어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 활용가능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 프로그램 1 - Microsoft Edge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PrintPop.jsp?selGbn=umd&isNoScr=script&s_ty...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0-3번지		
지역	대	면적	361.1 m²
개발공시지가 (㎡당)	1,717,000원 (2024/01)		
지역지구들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속사육제한구역<가속본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남정유치원(수원교육지향정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확인도면		별첨	



도시지역

중로3종(폭 12m~15m)

소로1종(폭 10m~12m)

소로2종(폭 8m~10m)

소로3종(폭 8m 미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아파트공동

법정동

축척 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다른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영향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정도면상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도면상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토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1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34-1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정왕동 1134-1	900	답	자연녹지지역	404,700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시흥시에서 공원 용도로 대부 중																			
추천사유	○ 기존 대부계약 중으로 지자체 활용가능성 확대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 프로필 1 - Microsoft Edge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PrintPop.jsp?selGbn=umd&isNoScr=script&is_ty... <table><tr><td>소재지</td><td colspan="2">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34-1본지</td></tr><tr><td>지목</td><td>답</td><td>면적 900㎡</td></tr><tr><td>개별공시지가 (㎡당)</td><td colspan="2">404,700원 (2024/01)</td></tr><tr><td>지역지구등 지정여부</td><td colspan="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td></tr><tr><td>「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td><td colspan="2">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군민공원 상대보조구역(2013-07-19) <교육친화 보포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td></tr></table> 확인도면 범례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은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조지구, 「탄소보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성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골자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나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34-1본지		지목	답	면적 900㎡	개별공시지가 (㎡당)	404,7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군민공원 상대보조구역(2013-07-19) <교육친화 보포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34-1본지																			
지목	답	면적 900㎡																		
개별공시지가 (㎡당)	404,7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군민공원 상대보조구역(2013-07-19) <교육친화 보포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7-8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대부남동 17-8	446.4	전	자연녹지지역	164,1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묵전상태의 유휴지				
추천사유	○ 일정규모 이상의 유휴지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소제지 지목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부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7-8번지 전 164,100원 (2024/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통폐합관리지구, 생활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생활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확인도면 1:1200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표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분류가 적용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정도면상의 고시가 관련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도면상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69																																																												
재산구분	건물(국세물납)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화봉리 69	310	대	생산관리지역	89,8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64.14		1	1998.3.9																																																									
관리현황	○ 유헴 상태의 건물 및 대지																																																												
추천사유	○ 건물을 활용한 다양한 용도 사용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 프로필 1 - Microsoft Edge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PrintPop.jsp?selGbn=umd&isNoScr=script&is_ty... <table><tr><td>소재지</td><td>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69번지</td><td>면적</td><td>310 m²</td></tr><tr><td>지역</td><td>대</td><td>개별공시지가 (㎡당)</td><td>89,800원 (2024/01)</td></tr><tr><td>지역지구등 지정여부</td><td colspan="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td></tr><tr><td>『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td><td colspan="3">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출원경보전법>, 자연보전지역 <수도환경보전법></td></tr><tr><td colspan="4">확인도면</td></tr><tr><td colspan="2"></td><td colspan="2">범례</td></tr><tr><td colspan="2">유역사상</td><td colspan="2">☐ 자연보전권역 ☐ 영농여건불리농지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보전산지 ☐ 일일농산지 ☐ 준보전산지 ☐ 사방지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법정동</td></tr><tr><td colspan="4">축척 1 / 1200</td></tr><tr><td colspan="4">유의사항</td></tr><tr><td colspan="4">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td></tr><tr><td colspan="4">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별도보조지구·지구보전법, 제5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지방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td></tr><tr><td colspan="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상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상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td></tr><tr><td colspan="4">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축척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td></tr><tr><td colspan="4">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지방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td></tr></table>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69번지	면적	310 m ²	지역	대	개별공시지가 (㎡당)	89,8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출원경보전법>, 자연보전지역 <수도환경보전법>			확인도면						범례		유역사상		☐ 자연보전권역 ☐ 영농여건불리농지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보전산지 ☐ 일일농산지 ☐ 준보전산지 ☐ 사방지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법정동		축척 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별도보조지구·지구보전법, 제5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지방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상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상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축척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지방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69번지	면적	310 m ²																																																										
지역	대	개별공시지가 (㎡당)	89,8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출원경보전법>, 자연보전지역 <수도환경보전법>																																																												
확인도면																																																													
		범례																																																											
유역사상		☐ 자연보전권역 ☐ 영농여건불리농지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보전산지 ☐ 일일농산지 ☐ 준보전산지 ☐ 사방지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법정동																																																											
축척 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별도보조지구·지구보전법, 제5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지방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상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상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축척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지방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6-17																				
재산구분	舊 지구대(치안센터) 건물																				
토지현황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석수동 266-17	259.1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6,000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	층수	준공시점	비고																	
	155.8	2	미상	舊 석수지구대																	
관리현황	○ 공실상태의 건물																				
추천사유	○ 1호선 관악역 도보 3분 거리 및 석수IC 차량 1분거리로 교통 편리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table><tr><td>소재지</td><td colspan="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6-17번지</td></tr><tr><td>지목</td><td>대</td><td>면적</td><td>259.1 ㎡</td></tr><tr><td>개발공시지가 (㎡당)</td><td colspan="3">2,686,000원 (2024/01)</td></tr><tr><td>지역지구등 지정여부</td><td colspan="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td></tr></table> 확인도면  참고사항 도시지역 대기관리권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공로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기반시설도시지구미분류 상대보호구역 대토1류(폭 35m~40m) 중토1류(폭 20m~25m) 소토1류(폭 10m~12m) 소토2류(폭 8m~10m) 법정동 축척 1 / 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은 이를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절도안건법, 제45조에 따른 절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명칭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축척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재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당·공평을 명문화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6-17번지			지목	대	면적	259.1 ㎡	개발공시지가 (㎡당)	2,686,0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6-17번지																				
지목	대	면적	259.1 ㎡																		
개발공시지가 (㎡당)	2,686,000원 (2024/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21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연대리 75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연대리 75	529	임야	농림지역	15,1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잡풀 상태의 유휴지				
추천사유	○ 도로 접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지로 활용가능성 있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22	경기도 오산시 서동 산 27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서동 산 27	5,741	임	도시지역	101,000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임야 상태의 유휴지																
추천사유	○ 도시지역 내 도로에 연접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지로 활용가능성 있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table><tr><td>소재지</td><td>경기도 오산시 서동 산 27번지</td></tr><tr><td>지목</td><td>임야</td></tr><tr><td>면적</td><td>5,741 ㎡</td></tr><tr><td>개발공시지가 (㎡당)</td><td>101,000원 (2024/01)</td></tr><tr><td>지역지구용 지정여부</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td></tr><tr><td>『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법』 제10조 및 제11조 공공지역 행위제한 확인요양)</td></tr></table> 속척 1 / 1200 유의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은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관련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추방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재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서동 산 27번지	지목	임야	면적	5,741 ㎡	개발공시지가 (㎡당)	101,000원 (2024/01)	지역지구용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법』 제10조 및 제11조 공공지역 행위제한 확인요양)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서동 산 27번지															
지목	임야																
면적	5,741 ㎡																
개발공시지가 (㎡당)	101,000원 (2024/01)																
지역지구용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법』 제10조 및 제11조 공공지역 행위제한 확인요양)																

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7-27				
재산구분	건물(舊 관세청 건물)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신갈동 17-27	4,610.3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72,0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33.23		1층	1997.6.21	
관리현황	○ 일시사용승인으로 25.11.05.까지 사용 중(국가인권위원회)				
추천사유	○ 도시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유헴재산으로 활용가능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24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72-4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월암동 572-4	1,382	공원	자연녹지지역	115,400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공원부지로 사용 중																																																
추천사유	○ 기존 대부계약 중으로 지자체 활용가능성 확대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 프로필 1 - Microsoft Edge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PrintPop.jsp?selGbn=umd&isNoScr=script&is_ty... <table><tr><td>소재지</td><td colspan="2">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72-4번지</td><td>면적</td><td>1,382 ㎡</td></tr><tr><td>지목</td><td colspan="4">공원</td></tr><tr><td>개발공시지가 (㎡당)</td><td colspan="4">115,400원 (2024/01)</td></tr><tr><td rowspan="2">지역지구도 지정여부</td><td colspan="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td><td colspan="2">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td></tr><tr><td colspan="2">다만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td><td colspan="2">가축사육제한구역(월암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지구(2023-06-30) <공공주택 특별법>, 비밀안전제2구역(현술) <대법 165호-173.21m 이하 위약(2015. 12. 21.)-공시지가 및 공시세율 보호법>, 대기환경개선구역 <대기환경의 대기환경개선구역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개선구역 <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지역 <수도관정비특별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 <하수도법></td></tr><tr><td colspan="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td></tr><tr><td colspan="2">확인도면</td><td colspan="3">발해</td></tr><tr><td colspan="2"></td><td colspan="3"> ☐ 대기관리구역 ☐ 도시지역 ☐ 과밀억제지역 ☐ 토지거래계약제한허가구역 ☒ 자연녹지지역 ☐ 과밀억제구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 대기환경개선지역 ☐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 배수구역 ☐ 하수처리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 하수도 ☐ 근린공원 ☐ 법정동 축척 1 / 1200 </td></tr><tr><td colspan="5">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td></tr></table>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72-4번지		면적	1,382 ㎡	지목	공원				개발공시지가 (㎡당)	115,400원 (2024/01)				지역지구도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다만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월암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지구(2023-06-30) <공공주택 특별법>, 비밀안전제2구역(현술) <대법 165호-173.21m 이하 위약(2015. 12. 21.)-공시지가 및 공시세율 보호법>, 대기환경개선구역 <대기환경의 대기환경개선구역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개선구역 <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지역 <수도관정비특별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 <하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확인도면		발해					☐ 대기관리구역 ☐ 도시지역 ☐ 과밀억제지역 ☐ 토지거래계약제한허가구역 ☒ 자연녹지지역 ☐ 과밀억제구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 대기환경개선지역 ☐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 배수구역 ☐ 하수처리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 하수도 ☐ 근린공원 ☐ 법정동 축척 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72-4번지		면적	1,382 ㎡																																													
지목	공원																																																
개발공시지가 (㎡당)	115,400원 (2024/01)																																																
지역지구도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다만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월암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지구(2023-06-30) <공공주택 특별법>, 비밀안전제2구역(현술) <대법 165호-173.21m 이하 위약(2015. 12. 21.)-공시지가 및 공시세율 보호법>, 대기환경개선구역 <대기환경의 대기환경개선구역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개선구역 <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지역 <수도관정비특별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 <하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확인도면		발해																																															
		☐ 대기관리구역 ☐ 도시지역 ☐ 과밀억제지역 ☐ 토지거래계약제한허가구역 ☒ 자연녹지지역 ☐ 과밀억제구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 대기환경개선지역 ☐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 배수구역 ☐ 하수처리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 하수도 ☐ 근린공원 ☐ 법정동 축척 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5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150-8				
재산구분	건물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사음동 150-8	5,380	대	자연녹지지역	670,1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사음동 150-7	3,119	대	자연녹지지역	670,100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1,573.88		1		
관리현황	○ 잡풀 상태의 유휴지				
추천사유	○ 도로 연접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지로 활용가능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26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11-7

재산구분

舊 지구대(치안센터) 건물

토지현황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신장동 211-7	60	대	일반상업지역	3,262,000
지번	면적(㎡)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	층수	준공시점	비고
216.84	2	미상	舊 송탄지구대

관리현황

○ 공실 상태의 유헴건물

추천사유

○ 송탄전통시장 등 상업지대에 위치하여 활용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 프로그램 1 - Microsoft Edge

https://www.eum.go.kr/web/ar/lu/LandDetPrintPop.jsp?selGbn=umd&isNoScr=script&s_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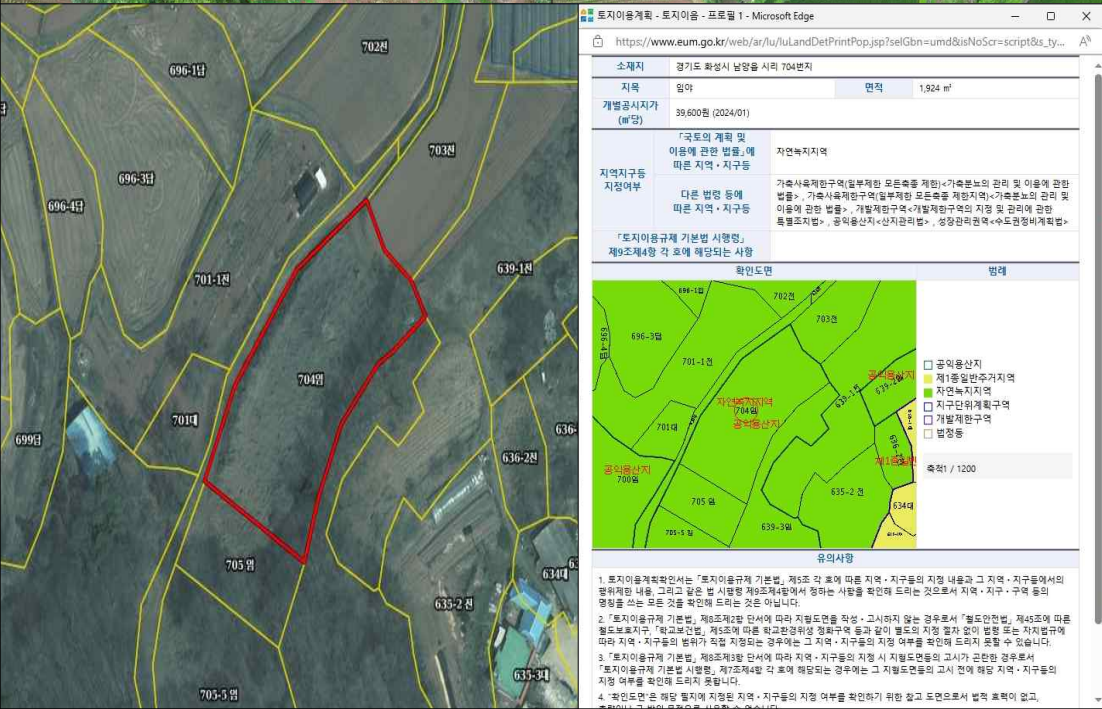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11-7번지		
지목	대	면적	60 ㎡
개발공시지가 (㎡당)	3,262,000원 (2024/01)		
지역지구들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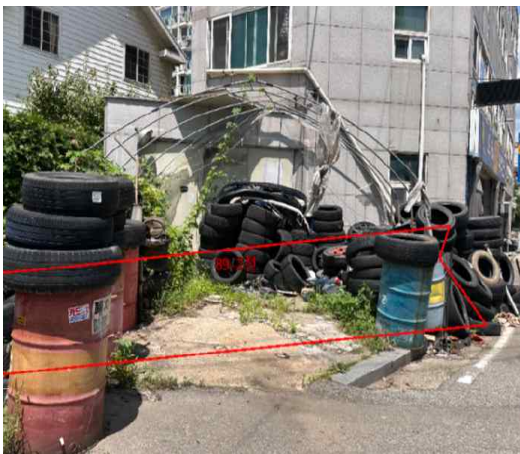
확안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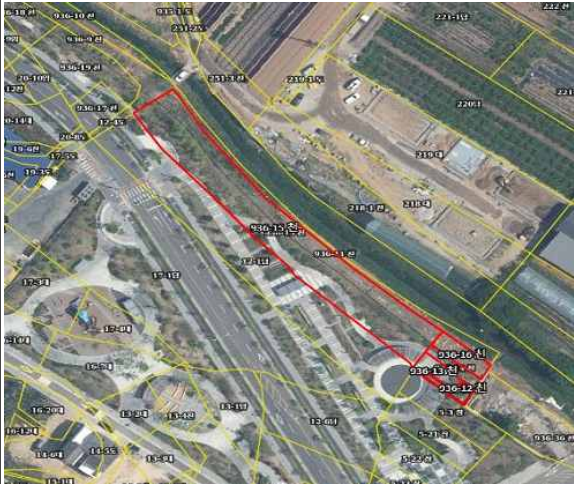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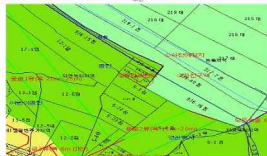
☐ 군용비행장 송탄대구역 제3종구역
☐ 철도보호지구
☒ 일반상업지역
☐ 보행로
☐ 중로1류(폭 20m~25m)
☐ 중로3류(폭 12m~15m)
☐ 소로2류(폭 8m~10m)
☐ 소로3류(폭 8m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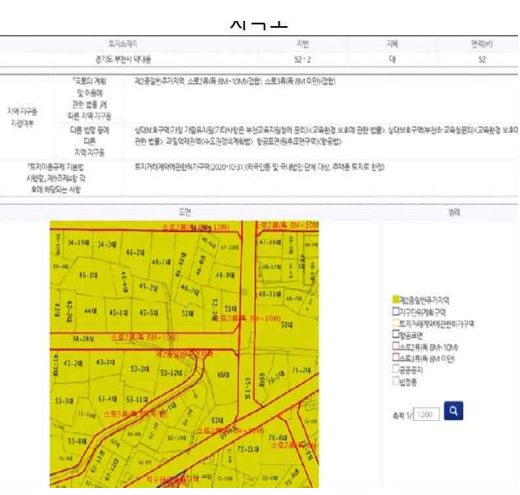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도확인법」 제45조에 따른 별도확인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은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도확인법」 제45조에 따른 별도확인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은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들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들의 지정 시 지방도면상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들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확인도면」은 해당 토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들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27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4				
재산구분	토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시리 704	1,924	임야	자연녹지지역	39,6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잡풀 상태의 유휴지				
추천사유	○ 도로 연접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지로 활용가능성 높음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2				
재산구분	국유재산 미활용 공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89-2	43	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24,3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도로변 공지				
추천사유	○ 주민을 위한 소공원으로 활용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2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936-12 외3												
재산구분	국유재산 잡종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936-12	48	하천	도시지역	115,500								
	936-13	85	하천	도시지역	115,500								
	936-15	1,641	하천	도시지역	115,500								
	936-16	113	하천	도시지역	115,500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문화공원으로 일부 활용 중												
추천사유	○ 인접 공원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table><tr><td>표준도</td><td>표준도</td><td>표준도</td><td>표준도</td></tr><tr><td>표준도</td><td>표준도</td><td>표준도</td><td>표준도</td></tr></table>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표준도										

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52-2				
재산구분	국유재산 잡종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52-2	52	대	2종 일반주거지역	1,610,0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현황 잡종지로 일부 쉼터(벤치) 설치됨				
추천사유	○ 도로변 미활용 잡종지로 주민 공원으로 활용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3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3-54 외1				
재산구분	국유재산 잡종지				
토지현황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73-54	172	대	계획관리지역	529,500
	지번	면적(m ²)	지목	지역	공시지가(원)
	73-55	112	전	계획관리지역	226,100
건물현황	연면적(m ²)		층수	준공시점	비고
관리현황	○ 현황 잡종지로 일부 심터(벤치) 설치됨				
추천사유	○ 대로변 미활용 잡종지로 지역주민 공원으로 활용 가능				
현황사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시각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3-54 외1 면적 172 지번 73-54 지목 대 지역 계획관리지역 지번 73-54 지번 73-55 지번 73-56 지번 73-57 지번 73-58 지번 73-59 지번 73-60 지번 73-61 지번 73-62 지번 73-63 지번 73-64 지번 73-65 지번 73-66 지번 73-67 지번 73-68 지번 73-69 지번 73-70 지번 73-71 지번 73-72 지번 73-73 지번 73-74 지번 73-75 지번 73-76 지번 73-77 지번 73-78 지번 73-79 지번 73-80 지번 73-81 지번 73-82 지번 73-83 지번 73-84 지번 73-85 지번 73-86 지번 73-87 지번 73-88 지번 73-89 지번 73-90 지번 73-91 지번 73-92 지번 73-93 지번 73-94 지번 73-95 지번 73-96 지번 73-97 지번 73-98 지번 73-99 지번 73-100 지번 73-101 지번 73-102 지번 73-103 지번 73-104 지번 73-105 지번 73-106 지번 73-107 지번 73-108 지번 73-109 지번 73-110 지번 73-111 지번 73-112 지번 73-113 지번 73-114 지번 73-115 지번 73-116 지번 73-117 지번 73-118 지번 73-119 지번 73-120 지번 73-121 지번 73-122 지번 73-123 지번 73-124 지번 73-125 지번 73-126 지번 73-127 지번 73-128 지번 73-129 지번 73-130 지번 73-131 지번 73-132 지번 73-133 지번 73-134 지번 73-135 지번 73-136 지번 73-137 지번 73-138 지번 73-139 지번 73-140 지번 73-141 지번 73-142 지번 73-143 지번 73-144 지번 73-145 지번 73-146 지번 73-147 지번 73-148 지번 73-149 지번 73-150 지번 73-151 지번 73-152 지번 73-153 지번 73-154 지번 73-155 지번 73-156 지번 73-157 지번 73-158 지번 73-159 지번 73-160 지번 73-161 지번 73-162 지번 73-163 지번 73-164 지번 73-165 지번 73-166 지번 73-167 지번 73-168 지번 73-169 지번 73-170 지번 73-171 지번 73-172 지번 73-173 지번 73-174 지번 73-175 지번 73-176 지번 73-177 지번 73-178 지번 73-179 지번 73-180 지번 73-181 지번 73-182 지번 73-183 지번 73-184 지번 73-185 지번 73-186 지번 73-187 지번 73-188 지번 73-189 지번 73-190 지번 73-191 지번 73-192 지번 73-193 지번 73-194 지번 73-195 지번 73-196 지번 73-197 지번 73-198 지번 73-199 지번 73-200 지번 73-201 지번 73-202 지번 73-203 지번 73-204 지번 73-205 지번 73-206 지번 73-207 지번 73-208 지번 73-209 지번 73-210 지번 73-211 지번 73-212 지번 73-213 지번 73-214 지번 73-215 지번 73-216 지번 73-217 지번 73-218 지번 73-219 지번 73-220 지번 73-221 지번 73-222 지번 73-223 지번 73-224 지번 73-225 지번 73-226 지번 73-227 지번 73-228 지번 73-229 지번 73-230 지번 73-231 지번 73-232 지번 73-233 지번 73-234 지번 73-235 지번 73-236 지번 73-237 지번 73-238 지번 73-239 지번 73-240 지번 73-241 지번 73-242 지번 73-243 지번 73-244 지번 73-245 지번 73-246 지번 73-247 지번 73-248 지번 73-249 지번 73-250 지번 73-251 지번 73-252 지번 73-253 지번 73-254 지번 73-255 지번 73-256 지번 73-257 지번 73-258 지번 73-259 지번 73-260 지번 73-261 지번 73-262 지번 73-263 지번 73-264 지번 73-265 지번 73-266 지번 73-267 지번 73-268 지번 73-269 지번 73-270 지번 73-271 지번 73-272 지번 73-273 지번 73-274 지번 73-275 지번 73-276 지번 73				